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104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리버스톤자산운용㈜
임직원	甲, 乙

2. 조치내용

○ **(금감원 원안)**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 제7호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, 동법 제85조 제8호에 따른 제삼자 자문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및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리버스톤자산운용㈜에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100백만원 부과, 甲에 직무정지 3월 부과,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 제8호에 따른 제삼자 자문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 및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 乙에 주의적 경고

○ **(수정의결)** 투자운용인력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에 대하여 범죄행위의 도관체가 되어 조직적·고의적 위반행위로 금융기관의 신뢰를 저해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 리버스톤자산운용㈜에 업무 일부정지 6월, 甲에 직무정지 6월로 기관·인적 제재는 가중하고, 제삼자 자문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,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에 대하여는 선례와 위반양태 등을 고려하여 운용역 乙을 각 지적사항의 행위자로 보아 문책경고로 제재하는 안건소위 수정심의안대로 의결

3. 조치이유

가.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금지 위반

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○ 리버스톤자산운용㈜(舊 티앤씨자산운용, 이하 '회사')은 丙의 지시로 회사에 입사한 丁에게 A의 자금으로 20xx.xx.xx. ㉮펀드를 설정하게 하고

○ 丁으로 하여금 丙의 지시에 따라 20xx.xx.xx.부터 20xx.xx.xx.까지 ㉮펀드에 특정 주식 종목만을 편입하게 하였으며, 동인이 지정해 준 가격에 따라 매매하게 하는 등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한 사실이 있음

나. 제삼자 자문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

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문업자 등 제삼자로부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아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

○ 회사는 20xx.xx.xx. ㉯펀드를 설정하고, 丙의 자문을 받아 20xx.xx.xx.부터 20xx.xx.xx.까지 특정 종목만을 편입하여 내부적인 판단 없이 제삼자 자문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

다.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 금지 위반

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·지시·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○ 회사는 ㉯펀드를 운용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동 펀드 수익자인 戊의 일상적인 요청 등에 따라

① 20xx.xx.xx. 戊가 동 펀드에 투자한 O억원의 자금으로 20xx.xx.xx. 동인 소유의 조합 B로부터 C사 전환사채 O억원을 매입하고

② 20xx.xx.xx. 戊가 동 펀드에 추가 투자한 O억원과 ㉯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 매도자금으로 D사로부터 C사 주식(O억원)을 매수하는 등 20xx.xx.xx.부터 20xx.xx.xx.까지 총 O회에 걸쳐 O주(O억원 상당)를 매수하였으며,

③ 20xx.xx.xx. C사 주식 전량을 B에 매도(O억원) 후 20xx.xx.xx. 동 펀드를 청산한 사실이 있음

4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 제7호와 제8호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87조 제4항 제5호와 제9호,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4-63조 제5호